

제11장 금융서비스

제11.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 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9장(투자) 및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은 그 장들 또는 그 장들의 조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1항에 기술된 조치에 적용된다.
 - 가. 제9.7조(수용 및 보상), 제9.8조(송금), 제9.11조(투자와 환경), 제9.12조(혜택의 부인), 제9.14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및 제10.11조(혜택의 부인)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나. 제9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은 이 장에 통합된 제9.7조(수용 및 보상), 제9.8조(송금), 제9.12조(혜택의 부인) 또는 제9.14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를 당사국이 위반하였다는 청구에 대해서만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다. 제10.10조(송금 및 지불)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1.5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2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1.5조제1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11.3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11.4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¹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¹ 이 호는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2. 이 조의 목적상,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설립하려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제11.5조 국경 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1-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권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의는 제1항과 불합치해서는 아니 된다.

3. 당사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6조 신금융서비스²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1.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11.7조 일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 나. 공개되면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의

²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사국들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자를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을 그 당사국의 국민, 그 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11.9조 비합치 조치

1.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그리고 제11.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규정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 2) 지방정부
 -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개선, 또는
 -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또는 제11.8조³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그리고 제11.8조는 부속서 III⁴의 자국 유보목록 제2절에 당사국이 규정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4조(시장접근)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속서 I 또는 II의 당사국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는, 그 유보항목에 규정된 조치,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각 경우에 맞게, 제11.2조,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제11.10조 예외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5조는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1.5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 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한도에서만 그 개정에 적용된다.

⁴ 니카라과와 파나마에 대해서는, 부속서 III의 제2절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제9장(투자), 특히 제13.22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3장(통신), 또는 제14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0.1조제3항(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⁵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장 또는 제9장(투자), 특히 제13.22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3장(통신), 또는 제14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0.1조제3항(적용범위)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9장(투자)이 적용되는 조치에 대한 제9.9조(이행요건)상의 당사국의 의무, 또는 제9.8조(송금) 또는 제10.10조(송금 및 지불)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9.8조(송금) 및 제10.10조(송금 및 지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계열사 또는 그러한 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동종의 여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11.11조 투명성

1. 당사국들은 금융기관과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외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제18.1조제2항(공표)을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⁵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 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⁶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4.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일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7.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8.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9.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제11.12조 국내 규제

각 당사국은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에 열거된 비합치 조치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제11.13조 자율규제기구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가호에 기술된 대로 사전에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다른 당사국이 그들의 의견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전자주소이든지 다른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11.2조 및 제11.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11.14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11.15조 인정

1.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 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을될 수 있다. 또는
 -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당사국들 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제2항에 기술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11.16조 금융서비스위원회

1. 당사국들은 금융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부속서 11-나에 규정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 당국의 공무원이 된다.
2. 위원회는
 -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
 - 나.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문제를 검토한다.

- 다. 제11.19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한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가 부여하거나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회합한다. 회합은 직접 또는 당사국들이 이용 가능한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회의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제11.17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당사국들은 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11-나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항에 따른 협의에 참여하는 규제당국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특정 규제, 감독, 행정 또는 집행 사안에 개입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금융규제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자국의 관련법으로부터 또는 당사국들의 금융당국 간 협정 또는 약정의 요건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18조 분쟁해결

1. 제22장(분쟁해결)의 제1절(분쟁해결)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22.7조(패널의 설치)가 적용된다.
 - 가.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 나. 그 밖의 경우,
 - 1)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22.7조제12항(패널의 설치)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 2) 피소 당사국이 제11.10조를 원용하는 경우,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3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진다.
- 나. 객관성, 신뢰성 그리고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 다.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분쟁 당사국과 연계되거나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 라.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될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4. 제22.13조(불이행 및 혜택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 중인 그 조치가

-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만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또는
- 다. 금융서비스 분야 이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11.19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9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제11.10조를 원용하는 경우,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그 사안을 서면으로 회부한다.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른 결정 또는 보고를 접수할 때까지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부에서, 위원회는 제11.10조가 투자자의 청구에 대해 유효한 항변이 되는지 여부 및 어떠한 정도까지 유효한 항변이 되는지의 문제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결정문 사본을 중재판정부와 공동위원회에 송부한다.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회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22.7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제11.18조에 따라 구성된다. 패널은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와 중재판정부에 송부한다. 보고서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제1항에 따른 회부의 목적상,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들의 금융서비스 당국이 제2항에 기술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중재판정부와 공동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관련 당사국들이 제1항에 따른 회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기술된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패널 설치에 대한 요청이 제3항에 언급된 60일의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6. 이 조의 목적상, 중재재판부란 제9.20조(중재인의 선정)에 따라 설립된 중재재판부를 말한다.

제11.20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또는
- 다.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그러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 1) 생명보험
 - 2) 손해보험
-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 사. 금융리스
- 아.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 자. 보증 및 약정
-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 1)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2) 외환
 -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5) 양도성 증권
 -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타. 자금중개업
-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 하.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투자란 제9.29조(정의)에 정의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해서는 다음을 말한다.

-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하여 규제 자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 나. 가호에 언급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이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이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제9.29조(정의)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9장(투자)의 목적상 투자이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이나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신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제1.6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 당사국 기업의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란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 정부 기관을 말한다.

부속서 11-가 국경 간 무역

한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1.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⁷, 위험평가⁸,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제11.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보험 중개

2. 제11.5조제1항은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제11.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나.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⁹,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¹⁰ 이 약속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⁷ 상담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⁸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⁹ 한국의 약속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 보호, 민감 정보의 권한 없는 재사용 금지, 그러한 정보의 처리에 관한 금융기관의 기록에 대한 금융규제당국의 접근 권한, 그리고 기술 시설의 위치 요건과 같은 특정한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¹⁰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 자문을 포함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 관련 그 밖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수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언급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증권¹¹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의 공급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1) 한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2) 한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코스타리카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1.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1.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¹²

- 가.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나.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¹³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2.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1.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국제 해상 운송, 그리고 국제 상업 항공. 그러한 보험은 다음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 나. 재재보험 및 재보험
- 다. 글로벌 계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¹⁴

¹¹ 2007년 3월 기준, 한국 영역에서 발행되는 증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화로만 표시된다. 한국 영역 밖에서 발행된 채권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한국의 집합투자기구에 의하여 보유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는 한국 영역내의 채권평가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¹² 코스타리카는 금융 정보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에 관하여, 소비자의 민감 정보 보호, 민감 정보의 권한 없는 재사용 금지, 그러한 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기록에 대한 금융규제당국의 접근 권한, 그리고 기술 시설의 위치 요건을 포함하는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청할 권리를 유보한다.

¹³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 자문은 포함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 관련 그 밖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수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언급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¹⁴ 이 호의 목적상,

- 라.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¹⁵
- 마.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후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¹⁶ 그리고
- 바. 초과액부분¹⁷

3. 제2항은 한국 기업이 코스타리카 내의 위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주체가 아니거나 그 보험에 대한 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엘살바도르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 다. 가호와 나호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그리고
- 라. 상담, 위험평가, 계리, 그리고 손해사정 서비스

2. 제11.5조제1항은 보험 서비스에 관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후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¹⁸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 가. 글로벌 계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보험업자에 의한 코스타리카 이외의 영역에서 작성된 다국적 고객을 위한 마스터 (글로벌) 보험증권의 적용범위가 코스타리카 내 다국적 고객의 운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 나. 다국적 고객은 외국계 제조업자 또는 외국계 서비스 제공자가 다수 지분을 가진 코스타리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이다.

¹⁵ 이 항은 제2항가호, 제2항나호 및 제2항다호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또는 보험감독청(SUGESE)에 등록된 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¹⁶ 이 항은 제2항가호, 제2항나호 및 제2항다호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또는 보험감독청(SUGESE)에 등록된 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¹⁷ 초과액부분이란 코스타리카 시장에서 공인된 기업에 의해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는 보험 적용 범위로 정의된다.

¹⁸ 인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약속은 제1항에 열거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 가.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기술된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 나. 요구되는 경우,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기술된 금융 자료 처리,¹⁹ 그리고
- 다.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 정의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서비스²⁰

온두라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1.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 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 다.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에 언급된 상담, 위험평가,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라호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 라. 제11.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보험 중개

2. 제11.5조제1항은 보험 서비스에 관한 제11.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²¹

3. 제11.5조제1항은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와 금융자료 처리²²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다.²³

¹⁹ 가호와 나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 또는 금융 자료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그러한 정보의 보호를 규율하는 엘살바도르의 법에 따르는 것으로 양해된다.

²⁰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 자문은 포함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 관련 그 밖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수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언급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²¹ 인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약속은 제1항에 열거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²² 온두라스의 약속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 보호, 민감 정보의 권한 없는 채사용 금지, 그러한 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기록에 대한 금융규제당국의 접근 권한, 그리고 기술 시설의 위치 요건과 같은 특정한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²³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 자문은 포함하지만 부수서비스는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

니카라과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 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가호1목 및 가호2목과 관련된 보험 위험에 대한 중개, 그리고

라.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 이 보험 부수 서비스는 보험 공급자에게만 제공될 것이다.

2. 제11.5조제1항은 보험 서비스에 관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인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약속은 제1항에 열거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기술된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나. 요구되는 경우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기술된 금융 자료 처리, 그리고

다. 중개와 신용조회 및 분석을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²⁴

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니카라과의 법은 가호 및 나호에서 언급된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처리가 그러한 보호 정보를 수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보호 정보는 은행 비밀 및 개인 정보의 개념에 따라 규율되는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까지에 언급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²⁴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 자문은 포함하지만 부수 서비스는 제11.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언급된 그러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파나마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3항을 조건으로,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만을 위한,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

2. 제11.5조제1항은 보험 서비스에 관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²⁵

3.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1항가호1목은 상업적 항공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4. 제11.5조제1항은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와 금융 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²⁶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²⁵ 인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약속은 제1항에 언급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²⁶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 자문은 포함하지만 부수 서비스는 제11.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언급된 그러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부속서 11-나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

1.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 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국립금융시스템감독위원회(Consejo Nacional de Supervisión del Sistema Financiero), 그리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및 보험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 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상응하는 권한 있는 당국인 금융시스템 감독원(Superintendencia del Sistema Financiero) 및 중앙준비은행(Banco Central de Reserva)과의 협의를 통하여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 라. 온두라스의 경우, 경제개발부(Secretaría de Estado en el Despacho de Desarrollo Económico), 온두라스중앙은행(Banco Central de Honduras) 및 국립은행보험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Bancos y Seguros)
 - 마. 니카라과의 경우, 산업통상개발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은행금융기관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 y otras Instituciones Financieras) 및 니카라과중앙은행(Banco Central de Nicaragua), 그리고
 - 바. 파나마의 경우,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 보험·재보험감독원(Superintendencia de Seguros y Reaseguros), 그리고 주식시장감독원(Superintendencia del Mercado de Valores)과의 협의를 통하여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